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
	배포일시	2018. 5. 18(금) / 총 3매(본문3)
담당 부서	항공운항과	담 당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김상수, 사무관 최수영, 주무관 서재운 • ☎ (044) 201-4259, 4273, 4261
	항공산업과	담 당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박명주, 사무관 좌명한 • ☎ (044) 201-4219, 4223
보 도 일 시		2018.5.18(금) 16시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한항공 램프리턴(땅콩회항) 관련 행정처분 및 조양호·조원태의 진에어 업무처리 관련 관계기관 통보

- ◇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금일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 관련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항공에 과징금 30.9억원을 부과하고, 사건후 국토부가 조치한 안전개선권고 중 대한항공이 원안과 상이하게 이행하던 부분도 당초 권고내용대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.
- ◇ 또한, (주)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 과정에서 조양호, 조원태가 진에어 내부분서를 결재해온 것을 발견하고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.

□ 금일 개최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2건(①뉴욕공항 램프리턴*, ②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)에 대해 과징금 총30.9억원을 처분하기로 심의·의결하였습니다.

① '14.12.5일 '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' 관련, 운항규정 위반*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27.9억원을, 前 부사장 조현아와 前 상무인 여운진에게 거짓 진술로 과태료 각 1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.

* 대한항공: ①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, ②사실확인시 거짓 서류 제출, ③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, ④사실조사시 거짓 진술

- 과징금 27.9억원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금액으로서,

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18.6억원에 50%를 가중하여 최종 27.9억원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.



- ② '18.1.10일 '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'은 운항승무원의 운항 절차 위반으로 판단하여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,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하였습니다.

[행정처분심의위원회('18.5.18) 심의안건 및 심의 결과]

안전	사건 내용	심의결과
①	뉴욕공항에서 대한항공 086편이 지상이동중 조현아 지시로 램프 리턴하여 객실사무장 하기후 재출발('14.12.5)	· 항공사: 과징금 27.9억원 · 조현아·여운잔 과태료 각 150만원
②	웨이하이 공항에서 대한항공 840편이 이륙을 위한 선회중 활주로 이탈('18.1.10)	· 항공사: 과징금 3억원 · 기장·부기장: 자격증명 정지 30일 15일

- 이와 관련, 램프리턴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감사하여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시에는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.
- 아울러, 램프리턴 이후 국토부의 5개 안전개선 권고('15.5월) 중 대한항공에서 개선권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 중이던 2건과 관련하여, 대한항공이 아래와 같은 원안이행 방안을 논의(이사회 개최, 5.10) 하였던 바,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.
 - ① '중앙안전위원회의 이사회 직속배치' 건은 세부구성 방안 및 권한,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차기 이사회(7월)에서 의결
 - ② '사외이사에 안전전문가 선임' 건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이므로 우선 現 사외이사 중 1명에 안전 임무를 부여하고, '19년 3월 주총에서 안전전문가 신규·교체임명 등을 결정
- 또한, 미국인 조현민의 '등기임원 재직'과 관련하여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(4.16~, 6차례)를 확인하는 과정에서,
 -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(주)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(주)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사람임에도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 - 이러한 사실은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,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.
- 한편, 진에어의 '외국인 임원 재직'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

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입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공시보시	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최수영 (☎ 044-201-4273), 항공산업과 좌명환 (☎ 044-201-4223) 사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